

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·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1호	20	30	30
나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2호	15	20	30
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3호	15	20	30